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예방 감독업무에 필요한 인력 300명(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확대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단서 중 “17명”을 “267명”으로, “12명)”을 “12명, 6급 125명, 7급 125명)”으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673”을 각각 “6,973”으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71”을 “334”로,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58”을 “94”로, 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3”을 “39”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45”를 “408”로,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99”를 “135”로,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을 “39”로, 행정서기 “382”를 “412”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678”을 각각 “6,978”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71”을 “334”로,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58”을 “94”로, 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3”을 “39”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45”를 “408”로,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99”를 “135”로,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

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을 “39”로, 행정서기 “453”을 “483”으로 한다.

별표 18 제2호나목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300명 (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②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8명(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u>17명</u>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u>12명</u>)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 ----- ----- ----- ----- ----- ----- ----- ----- ----- ----- ----- ----- ----- ----- ----- ----- ----- <u>267명</u> ----- ----- <u>12명</u> , <u>6급 125명, 7급 125명</u>)----- -----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0]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673</u>	<u>6,973</u>	+300
일반직 계	<u>6,673</u>	<u>6,973</u>	+300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 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	<u>271</u>	<u>334</u>	+63
·	·	·	
·	·	·	
공업주사 · 보건주사 또는 시 설주사	<u>58</u>	<u>94</u>	+36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 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u>3</u>	<u>39</u>	+36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45</u>	<u>408</u>	+63

·	·	·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99</u>	<u>135</u>	+36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u>3</u>	<u>39</u>	+36
·	·	·	
행정서기	<u>382</u>	<u>412</u>	+30
·	·	·	
·	·	·	

[별표 1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678</u>	<u>6,978</u>	+300
일반직 계	<u>6,678</u>	<u>6,978</u>	+300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 주사·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	<u>271</u>	<u>334</u>	+63
·	·	·	
·	·	·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 설주사	<u>58</u>	<u>94</u>	+36
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 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u>3</u>	<u>39</u>	+36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45</u>	<u>408</u>	+63
·	·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99</u>	<u>135</u>	+36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u>3</u>	<u>39</u>	+36
·	·	·	
행정서기	<u>453</u>	<u>483</u>	+30
·	·	·	
·	·	·	

